

14. 中·小 事業者에 대한 金融支援 細部對策

資料提供：財政經濟院 金融政策課

◇주요내용◇

- 95. 8. 10(목) 발표한 「중소사업자 지원방안 수립계획」에 따라 「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부대책」을 마련하여 시행
 - 중소사업자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방안,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부동산담보제 한 완화 방안 등 단시일내 조치가능한 사항은
 - 영세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,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95. 8. 21(월)부터 시행
 -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
 - 8월중에 관련기관과 함께 실태를 파악한 후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방안을 마련

1. 영세·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보증 지원강화

-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·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운전자금 지원을 위하여
 - 일정규모의 어음할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간이심사보증요건을 완화(95. 8. 21 시행)

◦ 보증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

– 제조업·광업·운송업 : 50인 이하

– 건설업 : 30인 이하

– 전기·가스·수도, 도소매, 기타 서비스 : 10인 이하

◦ 보증한도

– 제조업 5천만원, 비제조업 3천만원

◦ 간이심사보증 요건 완화

– 기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기준표를 적용하되, 심사기준을 완화

현행 상업어음할인 간이심사기준	완화 기준
• 신청일 현재 영업여부	→ • 좌동
• 최근 3개월내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이 없을 것	→ • 최근 3개월내 10일 이상 연체 대출금 이 2회 이상 없을 것
• 전은행에 연체사실 확인	→ • 주거래은행 확인
• 최근 1년이내 부도사실 없을 것	→ • 좌동
• 기 운전자금 보증액 포함하여 연간 매 출액의 1/2내에서 보증	→ • 기 운전자금보증액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보증

◦ 취급은행 : 위탁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행·국민은행·대동은행·동남은행

◦ 적용기간 : 95. 8. 21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

◦ 기대효과

– 상업어음할인 예상잔액(1조원)·할인기간(90일 수준) 등을 감안할 때 연간 3~4조 원 지원효과

2.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폐지

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큰 어려움이 담보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을 폐지(95. 8. 21 시행)

- 제 1·2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제고

* 금융권별 관련규정을 개정

(은행의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현황)

일반적인 경우	중소기업의 경우
① 1/2 이상이 임대되는 부동산(주택 및 당해 대지 제외)	95. 5. 15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담보취득가능
② 비업무용부동산	"
③ 개인의 유휴토지	"
④ 사치성 재산	"
⑤ 1/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되는 부동산	(좌동)
⑥ 제3자명의 부동산	담보취득가능(단 ⑤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)

- 신탁, 투금, 리스, 종금의 경우 은행과 동일
-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②③에 대해서는 취득기한에 제한없이 담보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, ①④에 대해서는 93. 3.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취득을 허용
- 보험의 경우 ①②③④에 대하여 취득기한 제한없이 담보취득 허용
- 대기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유지

3. 중소기업 전담은행 등의 영세·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

-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·중소기업 지원을 위해
 - 중소기업금융 전담은행에서 시설근대화자금 등을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여 별도 운용(95. 8. 21 시행)

- 지원대상

—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

◦ 자금용도 : 유통근대화 관련 시설자금, 식당시설 개보수 자금 등

(예시 : 중소기업은행)

— 전업자금, 시설개체자금, 정보화기기 도입자금, 공동판매·저장창고 설치자금 등

◦ 지원조건(취급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)

(예시 : 중소기업은행)

— 금리 : 일반대출금리

— 동일인한도 : 2억원

— 대출기간 : 건물 8년 이내, 기계 6년 이내

◦ 취급은행 등

— 중소기업은행, 국민은행, 대동은행, 동남은행, 평화은행

— 동 자금대출분에 대하여는 『제조업대출 지도비율』 산정대상에서 제외

* 필요시 소요자금 일부를 한은에서 통화채 중도환매 방법 등으로 지원

4.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추진

■ 영세·중소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관련 규제완화 및 신협설립 기준완화 등을 추진(95. 8. 21 시행)

가.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관련 규제완화

- 91년에 도입된 상호신용금고의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하여 자금운용면에서 신협·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간의 형평성 제고
- 다만, 상기업종에 대한 과다여신방지를 위하여 이들 업종에 대한 여신총액은 금고자기자본의 1배 범위내로 제한

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여관업등 특정업종¹⁾에 대한 여신금지 ◦ 다만, 여신금지업종중 을등급여관 및 여인숙 등 7개업종²⁾에 대하여는 금고자기자본의 1배 범위내에서 여신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금지 폐지 ◦ 다만, 동 업종에 대한 총액여신제한(금고자기자본의 1배 이내)유지

주1) 상호신용금고의 여신 금지업종현황

①불건전 오락기구제조업 ②호텔업과 여관업 및 콘도미니엄(관광호텔 제외) ③건평 33평 또는 대지 100평을 초과하는 식당업 ④주점업(유흥, 극장식 등) ⑤댄스홀, 댄스교습소 ⑥전자오락실 ⑦헬스클럽 ⑧골프장 ⑨도박장 ⑩사치성 이발소·미장원 ⑪욕탕업(대중탕 제외)

주2) 현재 여신취급 가능한 7개업종(금고자기자본의 1배 범위 이내)

①을등급 여관, 여인숙 ②식당업 ③대포집, 간이주점, 선술집 ④다방업 ⑤전당업 ⑥부동산업 ⑦당구장운영업

* 상호 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개정

◦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제도는 형행 유지

나. 신용협동조합 신설 인가기준 완화

◦ 신설인가기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신협설립 촉진

구 분	현 행	개 선
◦ 거리제한		
• 도시	300~500m 이상	100m 이상
• 읍면	1km 이상	200m 이상
◦ 조합원 수	150명 이상	100명 이상
◦ 인가횟수	연중 2회	연중 4회

* 신용협동조합 인가업무 처리요강 개정

5. 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타사항

◦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방안 등과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

– 8월중에 실태를 파악한 후 업계·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방안 마련